

2021년 제2차 추경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공고

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. 8. 26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관련 규정
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7조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5조

2. 사업 개요

- (개요)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·중견 미래유망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(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)

- (지원대상 사업주)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 기업) 및 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*

* 중앙부처 주관으로 기술혁신성·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·선정·인증된 기업, (벤처기업 · 이노비즈 기업 · 메인비즈 기업 등)

- (지원대상 청년) 만15세~34세 미취업 청년

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지원요건)

- 3개월 이상(주 15시간 이상) 근로계약 체결,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, 4대 사회보험 적용

* 고용일 이전 6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